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심사 전

대통령령 제 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 로 지급하는 경우는 법 제4조제3 항에 따라 공시되는 동일한 공시 기간 중에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 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 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 안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 ----- ----- ----- ----- ----- ----- ----- ----- -----.
<u><신 설></u>	<u>1.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하 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 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 원금을 지급하는 경우</u>
<u>1. ~ 3. (생 략)</u>	<u>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와 같음)</u>

〈 의안 소관 부서명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연 락 처	(02) 2110 - 1533